

● 임원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0410)

제정 2010. 1. 25. 규정 제339호
개정 2011. 4. 28. 규정 제373호
개정 2011. 10. 31. 규정 제381호
개정 2012. 6. 25. 규정 제394호
개정 2019. 6. 26. 규정 제559호
개정 2020. 9. 4. 규정 제59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의 사장·이사 및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임원” 이라 한다)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사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일 2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 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소속 공무원(도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파·회피할 수 있으며, 사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이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1.4.28>

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후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⑦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이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하고, 남성 또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9.4>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도지사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사장에게 추천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사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언론보도, 신문공고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하며,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노동이사의 경우,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임원후보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12.6.25, 19.6.26>

② 제1항의 모집 및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수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2배수 이상 될 수 있도록 추천 방식을 통한 후보자 모집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의2(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제9조에 따라 노동이사 후보자 선출을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호선
2. 선거관리위원 : 노사대표 각 3인

②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26]

제10조(제출서류) 임원으로 응모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1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사가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감사의 심사기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노동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선거 결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정 19.6.25>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 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심사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

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 한다.

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단, 감사의 심사평가표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추천업무 처리중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심사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하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2.6.25>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 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단, 노동이사 후보의 경우 제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선거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6.26>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선정후 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 이사의 경우는 도지사,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사의 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공사의 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 하여야 한다.

⑤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노동이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9조의2에 따른 선거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12.6.25, 19.6.26>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채용과정 공개) 임원 채용과정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2.6.25>

1.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채용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10. 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11. 4.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0.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6.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6. 26>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9. 4>

이 규정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11조 제2항 관련)】

임원후보자 심사기준

가. 사장후보자 심사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경영·경제와 주택, 택지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및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 선도적인 초우량 기업경영에 관한 신념과 비전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공·사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및 능력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능력 및 경험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자로서의 결단력,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 ·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 건전한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태도 · 정신적, 육체적 건강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자질 · 경기도·의회 및 언론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 관계 능력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에 대하여 면접을 통해 평가

나. 상임이사 후보자 심사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기업 경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 관련사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 관련산업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다. 비상임이사 후보자 심사기준 <신설 11.10.31>

구 분	세 부 기 준
경영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영 · 회계 · 예산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능력 ·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능력 · 대규모 조직의 인적 · 물적 자원 운영 경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험 · 자질 ·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 능력
공직자로서의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성,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윤리의무 준수 태도 · 투명경영에 대한 마인드
전문분야 및 공사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전문분야 경력 및 해박한 지식 · 토지 · 도시 · 주택분야에 대한 이해와 시견 · 경영 및 감사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 중 ·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래 예측 및 방향제시 능력
최고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의사결정자로서의 정책결정 능력 · 경영환경 및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 · 능동적 대응 능력

【별지 제1호 서식(제12조 제6항 관련)】

사장 서류심사 평가표

후보명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5점)	B (23점)	C (21점)	D (19점)	E (17점)
경영·경제와 주택, 택지분야의 전문적지식 및 경험	25점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25점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25점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25점					
합 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상임이사 서류심사 평가표

후보명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20점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20점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20점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20점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20점					
합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비상임이사 서류심사 평가표 <신설 11.10.31>

후보명 : ○ ○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경영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	20점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능력	20점					
공직자로서의 자질	20점					
전문분야 및 공사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20점					
최고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 능력	20점					
합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2011년 월 일

심사위원 : ○ ○ ○ (인)

【별지 제2호 서식(12조 제6항 관련)】

사장, 상임이사 면접심사 평가표

지원자 성명 :

구분	평가항목	점수					(/만점)
		수	우	미	양	가	
전문성 (20)	1.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5	4	3	2	1	
	3.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환경변화예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5	4	3	2	1	
리더십 (20)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혁신 (20)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20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개발사업의 인식	5	4	3	2	1	/10
	2.경영자로서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기타 (10)	1.경영자로서 업무수행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 유지	5	4	3	2	1	/10
	2.경영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용모 및 태도	5	4	3	2	1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비상임이사 면접심사 평가표<신설 11.10.31>

후보명 : ○ ○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경영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	20점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능력	20점					
공직자로서의 자질	20점					
전문분야 및 공사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20점					
최고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 능력	20점					
합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2011년 월 일

심사위원 : ○ ○ ○ (인)